

# **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청렴/반부패 업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**

2013. 7. 5



**국 방 과 학 연 구 소**  
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



**국방기술품질원**  
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
#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청렴/반부패 업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

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 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기본 운영원칙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**제 3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반부패 청렴업무
2. 반부패 경쟁력 제고 업무
3.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
4.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
5. 공직기강감사를 포함한 자체감사 발전

**제 4조(실무위원회의 설치)** 본 협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 5조(실무위원회의 운영)**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이 각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6조(협의조정)**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7조(비용 부담)** 협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8조(기밀유지)**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은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 9조(효력)** 본 협약은 양 기관장이 위임한 청렴업무수행 부서장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,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**제 10조(협정의 해지)**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 11조(법적 구속력)**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8조(기밀유지)를 제외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 제8조(기밀유지) 이외의 쌍방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**제 12조(기타)** 본 협정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7월 5일

---

감 사 관      ○      ○      ○  
국 방 과 학 연 구 소  
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지 160

---

감 사 실 장      ○      ○      ○  
국 방 기 술 품 질 원  
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번지

#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간 청렴/반부패 업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

2013. 7. 5

#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간 청렴/반부패 업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

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 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기본 운영원칙)**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**제 3조(협력분야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1. 반부패 청렴업무
2. 반부패 경쟁력 제고 업무
3.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
4.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
5. 공직기강감사를 포함한 자체감사 발전

**제 4조(실무위원회의 설치)** 본 협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 5조(실무위원회의 운영)**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이 각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6조(협의조정)**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7조(비용 부담)** 협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 8조(기밀유지)**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은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**제 9조(효력)** 본 협약은 양 기관장이 위임한 청렴업무수행 부서장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,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**제 10조(협정의 해지)**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 11조(법적 구속력)**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8조(기밀유지)를 제외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 제8조(기밀유지) 이외의 쌍방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**제 12조(기타)** 본 협정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, 쌍방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7월 5일

---

감 사 실 장      ○      ○      ○  
국 방 기 술 품 질 원  
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번지

---

감 사 관      ○      ○      ○  
국 방 과 학 연 구 소  
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지 160